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안)

2026. 6.

교 육 부

차 례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3

Ⅱ. 현황 및 문제점 4

Ⅲ. 개선 방안 6

Ⅳ. 향후 일정 11

[붙임] 관련 법령 12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중에도 **병가 없이 근무**하다 **사망**하는 **사건 발생**('26.2.14.)

- 유치원 **교사**가 **아파도 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대두**

※ 한겨레(3.19.), 조선일보(4.9.) 등 다수 언론사에서 관련 내용 보도

○ **유치원 교사 부재**(휴가, 연수 등) **시 각 시도교육청**에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 추진**

< 추진 근거 >

○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감독),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제55조(복무), 제43조(지원)

○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 추진 경과

○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26.2.14.), **언론보도**(3.19.~)

○ 사건 발생 유치원 **감사**(부천교육지원청) **및 수사**(부천원미경찰서) 실시(3.25.~)

○ **시도교육청** 유치원 지원 담당자 **협의회** 개최(3.31.)

○ **시도교육청** 유치원 대체인력 지원 **현황 조사**(4.8.~4.14.)

○ **사립유치원 교사 간담회** 개최(5.8.울산, 5.13.경기, 5.14.전남)

○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과장 회의** 개최(5.13.)

○ **교육부장관 유치원 방문 및 의견 청취**(세종 해밀유치원, 5.15.)

○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개최(5.28.)

Ⅱ 현황 및 문제점

□ 공·사립 유치원 수업 지원 교사·강사 배치 부족

○ 유치원에서는 **긴급한 교사 공백** 발생 시 **갑작스러운 대체인력 채용**이 **쉽지 않아 대체인력**을 **직접적**으로 **지원**(방문)받는 방식 **선호**

※ [시도교육청 협의회 의견] 대체인력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여 수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가 높고, 예산 부담도 크지 않음('26.3.31.)

< 유치원 교사 연가 미사용 사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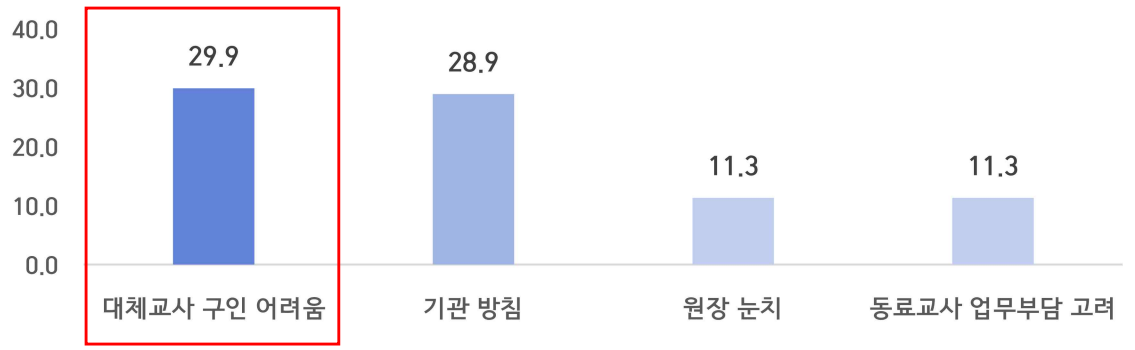

※ 출처: 육아정책연구소(2023)

○ 현장 선호와는 달리, 유치원에 **대체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수업**을 **대신**해 주는 **교사, 강사 배치**는 **부족**

※ 4개 교육청만 수업 지원 교·강사 배치(평균 15.5명)

□ 사립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범위 편차 존재

○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의 **대체인력** 사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는 **시도교육청 간 편차** 존재

※ 특별휴가, 연수는 모든 교육청에서 지원하나, 공가는 8개 교육청에서 미지원, 연수 중 자격연수는 모든 교육청에서 지원하나 직무연수는 9개 교육청에서 미지원

○ 부천 교사 사망 사고를 통해 사각지대로 확인된 **병가 지원 여부**도 **시도교육청 간 편차** 존재

※ 6개 교육청 조건 없이 지원, 6개 교육청 조건부 지원, 5개 교육청 미지원(단, 미지원 교육청 중 인건비 대신 인력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 존재, 세종은 사립유치원 없음)

□ 공·사립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 관련 편차 존재

○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을 구성함에 있어 **규모, 인력 모집 방식** 등 **시도교육청 간 편차** 존재

※ 9개 교육청만 대체인력풀 운영(규모 4~621명으로 상이), 대체인력풀 운영 교육청 중 3개 교육청만 정기적(연 1~2회)으로 인력 모집

○ 대체적으로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체인력풀**을 **모집**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 일부 시도에서 **교육지원청 단위 대체인력풀 운영**(지역 제한), **사립유치원**에 **권한 미부여** 등 **접근성 제한 사례** 발견

○ 대체인력풀에 등록된 유휴 인력에 대한 **검증 절차 미흡, 교육·연수 부재** 등 **인력 관리 체계 부실**

※ 4개 교육청만 등록자 징계 조회 실시, 1개 교육청만 등록자 대상 연수 운영

□ 사립 사립유치원 교사 복무 관리 미흡

○ **사립유치원**의 **교원 복무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 자료 제공** 등 **지원 부족**

※ 5개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장 대상 교원 인사 관련 연수 미실시, 6개 교육청만 교원 인사 관련 안내자료 정기 배포

< 유치원 교사 정책 실행 체감도: 권익보장 교육 및 연수(%) >

※ 출처: 육아정책연구소(2023)

○ 사립유치원의 **교사 복무 운영**과 유치원장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점검·감독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

※ 6개 교육청만 사립유치원 대상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6개 교육청만 사립유치원 복무 관련 상담·신고센터 운영

Ⅲ 개선 방안

추진 원칙

◈ 교사의 **휴식**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 시도교육청별 **여건**과 **상황**에 맞게 **필요한 과제 추진**

◈ **시도교육청**의 **지원 확대**와 **사립유치원 책무성 확보**

변화되는 모습

□ 유치원 수업 지원 교사, 강사 배치

세부 과제	현행	변화
순회교사 근거 마련	없음	「유아교육법」 개정
수업 지원 강사 배치	일부 시도 배치	전체 시도로 단계적 확대

□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세부 과제	현행	변화
병가 지원	미지원, 조건부 지원	기간, 종류에 관계없이 지원
인력·인건비 병행 지원	인력 / 인건비 중 지원	유치원에서 원하는 지원 선택
지원범위 확대	시도별 지원범위 상이	연수, 출장 등 촘촘하게 지원

□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 구축

세부 과제	현행	변화
접근성 개선	접근성 제한	접근성 확대
질관리	관리 편차 존재	전체 징계 조회, 연수 실시

□ 사립유치원 책무성 확보

세부 과제	현행	변화
인사 전문성 제고	연수, 안내자료 미제공	연수, 안내자료 제공
지도·점검 강화	일부 시도 정기 지도·점검	전체 시도 정기 지도·점검
상담·신고센터 운영	일부 시도 운영	전체 시도 운영
처우 개선	지원금, 수당 지원	지원금, 수당 단계적 인상

1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 공·사립 수업 지원 교사, 강사 배치

○ (**순회교사 근거 마련**)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 교사**의 **긴급한 부재** 시 유치원을 **방문**하여 **수업**을 **지원**하는 **순회교사 배치 근거 마련**

※ 「유아교육법」 제20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0조(교직원의 구분) < 신 설 >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③ 유치원의 긴급한 교사 부재 시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순회교사를 둘 수 있다.

【참고】 유사 입법례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다만,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지 아니하고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어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강사 배치**)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 인근 **유치원**의 교사 부재 시 **수업**을 **지원**하는 **강사 배치**

< 수업 지원 방법 예시 >

기존 수업 보결	합반 + 수업 보조	특별수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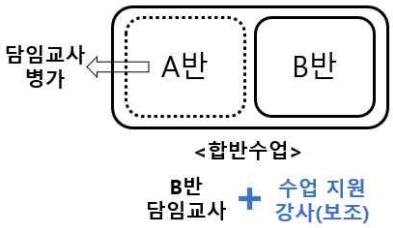	
▪ (**방식**) 수업 지원 강사가 **기존 수업**을 **이어서 함** ▪ (**장점**) 학급별 **교육과정 연속성 유지**	▪ (**방식**) 옆 반과 **합반**하고, 수업 지원 강사는 **수업 보조** ▪ (**장점**) **유치원별로 특화**된 **교육과정 유지**(숲, 생태 등)	▪ (**방식**) 수업 지원 강사가 **하루 특별수업** 운영 ▪ (**장점**) **수업 지원 강사**의 **전문성 발휘**

※ 수업 지원 강사 단독 수업 시, 유치원 교사 자격 소지 필요

○ (**인력 확대**) **법령 정비, 예산·정원 확보**를 통해 **교사, 강사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수업 지원의 **지역적·시간적 사각지대 최소화**

□ 사립 사립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 **(병가 포함)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27년까지 **개선**하여 **병가 지원**** **확대**

* 사립유치원 교원의 휴가, 연수 등 부재로 인한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의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 [현행 사례] 병가 미지원, 7일 이상 병가만 지원, 공무상 병가만 지원 등
→ [개선] 병가의 기간, 종류에 관계없이 지원(단, 복무 규정 범위 내)

- **(지원범위 확대)** 병가 외에도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 **대체인력 지원 범위**를 **연수, 출장** 등 **누락 없이 지원**하도록 **단계적**으로 **상향 확대**

< 사립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범위 확대(안) >

교육청	현행 지원 범위	확대
A교육청	공가, 특별휴가, 병가	**[전체 시도교육청]** **공가, 특별휴가, 병가,** **연수**(자격, 직무), **출장** 등
B교육청	(공, 특, 병) + 연수	
C교육청	(공, 특, 병, 연) + 출장	

○ **(인력·인건비 병행 지원) 인력**과 **인건비 지원** 모두 **하루 이상 병가**를 **지원**하여 **유치원**에서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사립유치원 인력 / 인건비 병행 지원(안) >

교육청	현행(예시)		개선
	7일 미만	**7일 이상**	**1일부터**
A교육청	인력 지원	인건비 지원	**인력, 인건비** 중 유치원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지원(울산교육청 시행 중)

2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 구축 · 운영

□ 공·사립 대체인력풀 구축 · 운영

○ **(대체인력풀 구축) 시도교육청**(본청) **주관**으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을 **구축**하여 **긴급**하게 **교사**가 **필요**한 **유치원**에 **정보 제공**

* 유치원 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나, 현재 미취업 상태인 자

※ 현재 9개 교육청에서 대체인력풀 운영(평균 규모 약 267명) → 전체 교육청 운영

○ (**접근성 개선**) 대체인력풀 플랫폼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사립유치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접근 권한 부여** 및 **홍보 강화**

< [참고]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대체인력풀 제공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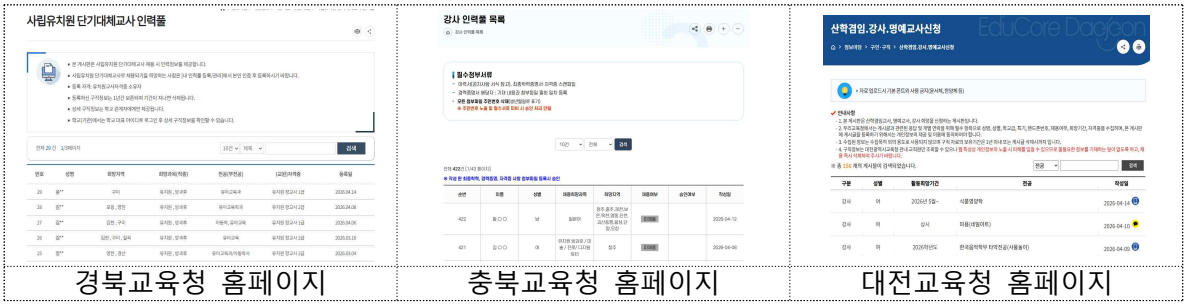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충북교육청 홈페이지	대전교육청 홈페이지

□ 공·사립 대체인력풀 관리 강화

○ (**정보 현행화**)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주기적**으로 **정보***를 **현행화**하여 **대체인력풀 이용률 제고**

* 현재 취업 상태, 근무 가능 요일/시간, 거주 지역 변동 사항, 자격 취득 현황 등

○ (**질관리**) 모집된 인력에 대해 **징계 이력**을 **조회**하여 **대체인력풀**에 **포함**하고, 정기적인 **온·오프라인 연수***를 **실시**하여 **전문성**** **확보**

* 연수 내용(안): 교육과정 실행, 유아 성장·발달 이해, 유아 정서·심리 지원 등

** 대체인력풀 제공 정보에 개인별 연수 이수 이력 포함

< 시도교육청 유치원 대체인력풀 단계별 운영 모형(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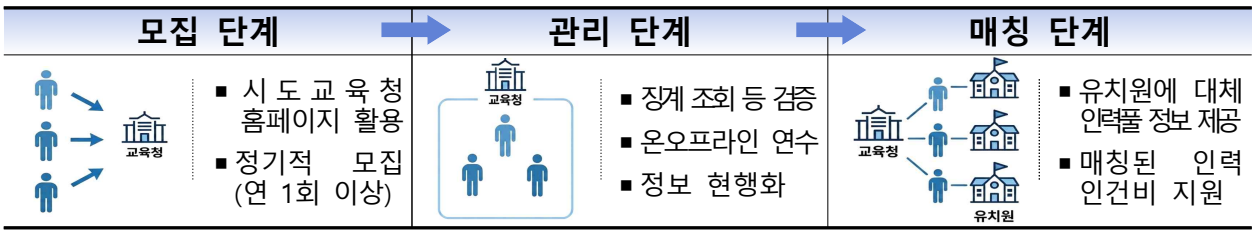

3 사립유치원의 책무성 확보

□ 사립 교원 인사 운영 전문성 제고

○ (**안내자료 제작·배포**) 사립유치원 **교원 복무 관련 법령, 부당사례** 등 인사 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안내자료**(책자, 리플릿 등) **제작·배포**

※ (교육부) 중앙 단위 사립유치원 인사 안내자료 제작 → (시도교육청) 지역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 → (교육지원청) 안내자료 인쇄 및 사립유치원 배포

< [참고] 시도교육청 인사·복무 안내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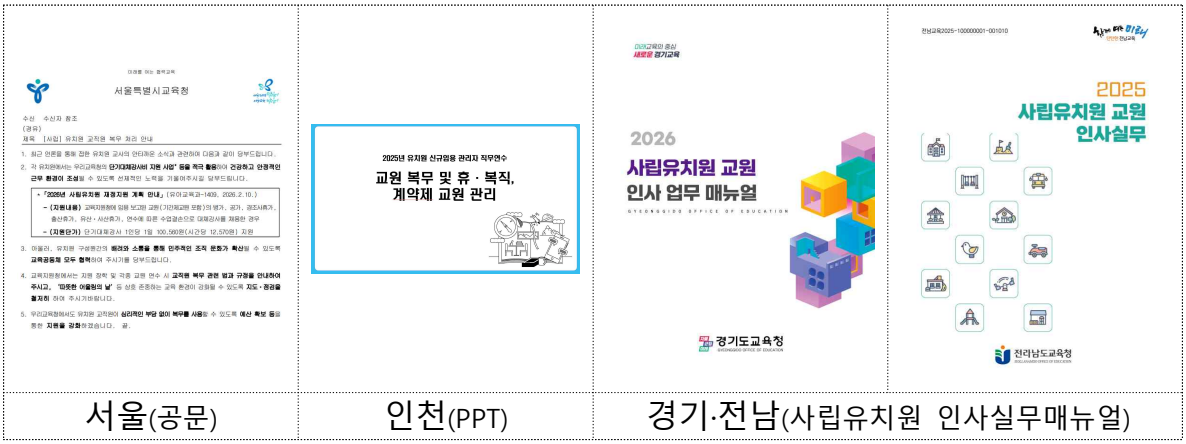

서울(공문)	인천(PPT)	경기·전남(사립유치원 인사실무매뉴얼)

○ **(연수 운영)** 시도별 **사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인사 제도, 지역별 대체인력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연수** 실시

※ 원장·원감 연 3시간 이상, 교사 연 1시간 이상 필수 실시(전수 실시 원칙)

□ 사립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강화

○ **(정기 점검 실시) 사립유치원**에서 **교사 복무**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지도·점검*** 실시

* 지역별 사립유치원 수, 교육지원청 행정 여력을 고려하여 표본 또는 전수 점검, 서면 또는 방문 점검을 시행하되, 이상 징후 발견 시 방문 점검 필수 실시

※ (잘못 운영 사례) 공가, 특별휴가 사용 제한, 법정 연가일수 미보장, 자격연수 이수 기회 제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

- **(감염병 관리 강화) 감염병**에 걸린 **교원**에게 **충분한 휴식 기회**를 **보장**하고, 원장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 **지도·감독** 실시

*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유치원용)」(교육부)

○ **(상담·신고센터 운영)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사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문제 발견 시 **지역단위** 지도·점검 실시**

* (설립 방법) 사립유치원 인사 상담·신고센터 신규 설립 또는 기존 센터(교육활동보호 신고센터, 갑질신고센터 등) 기능 확장

** 부당사례 발견 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 소속 유치원을 특정할 수 없도록 지역단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조치

○ (**교육청 인력 증원**) 사립유치원 교원 인사 운영 전문성 제고 및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사립유치원 담당 공무원 증원**

※ 사립유치원 책무성 확대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 추진('27.~)

□ 사립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 (**처우개선 지원금 인상**) **공·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 격차**를 중장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처우개선 지원금**(보통교부금) **단계적**으로 **인상**

※ 처우개선비 단계적 인상(안): ('23) 77만원 → ('25) 88만원 → ('27) 90만원

○ (**장기근속수당 인상**) 사립유치원의 **고경력 교사 근속 기반 마련**을 위해 **장기근속수당 지원금**(보통교부금)을 **단계적**으로 **인상**

※ 장기근속수당 단계적 인상(안): ('22) 3만원 → ('25) 6만원 → ('27) 8만원

Ⅳ 향후 일정

○ 유치원 순회교사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26.12.)

※ 단, 국회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사립유치원 교원 인사 운영 안내자료 제작·배포(~'27.2.)

붙임 **관련 법령**

□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 기관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① 교육감은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다만,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지 아니하고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어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1. 「검역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4. 그 밖에 학교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